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 '99 - 72

제안연월일: 1999. 11.4. 제 안 자: 거 창 군 수

□ 제정이유

- 상위법 (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) 에 규정된 내용과 개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(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)을 정한 『 거창군공중 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』를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하고,
-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현재의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폐지
- 공중화장실의 위탁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위탁·관리 가능
 - 위탁·관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·관리비 보조가능
-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(안 제 5조, 6조)
 - 화장지,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
 -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 수시 점검 및 정비

□ 제정근거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
- 조례·규칙·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 정비계획

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6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중화장실"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쾌적한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위탁관리)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구역 읍·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·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5조 (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) 군수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1. 화장지(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)
 - 2. 비누(또는 액체비누)
 - 3. 탈취제 및 소독약품
- 제6조 (유지·관리기준) 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.
 - 1. 1일 3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여건상 이용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2.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·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

부 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.